

# [ ]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

## [ ]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    | 접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즉시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신고인      | 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| ② 생년월일  |
|          | ③ 주 소                    | (전화: )  |
| ④ 사업의 종류 | (운영형태: )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⑤ 변경연월일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⑥ 변경사항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|
| ⑦ 변경사유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|  |    |
|--|----|
| <p><b>국 토 교 통 부 장 관</b><br/> <b>대 도 시 권 광 역 교 통 위 원 장</b><br/> <b>시 · 도 지 사</b><br/> <b>시 · 도 ○○운송사업조합장</b><br/> <b>시 · 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</b></p> | 귀하 |
|--|----|

| ※ 첨부서류  | 수수료   |
|---|---|
| 1. 신·구 사업계획대비표(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<br>2.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<br>3. 자동차 대수, 보유 차고 면적,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<br>4.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<br>5. 예약소의 도면(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<br>6. 주차 대수,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,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(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| 증차: 기본 5,000원<br>자동차 1대당: 2,000원 추가<br>운행시간: 1,400원<br>기타: 2,000원 |

### 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